

# 이해충돌이란?

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 
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

## 적용대상 → 모든 공직자

공무원,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임직원, 국·공립학교 교직원,  
공무수행사인\*  
\* 각종 위원회 위원 및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사인 등

## 직무관련자

**1**     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 
           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
        ...     인가, 허가, 면허, 등록, 특허, 인증 등

**2**     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 
           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
        ...     단속, 조사, 감독, 부담금·과태료 부과 등

**3**     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 
           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
        ...     공사계약, 용역계약, 물품구매계약 등 각종 계약

**4**     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 
           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 
        ...     산하기관, 피평가기관, 피조사기관 등의 공직자

## 사적이해관계자

- 01      공직자 자신이나 그 가족 ('민법' 제779조에 따른 가족\*)
  - \* 배우자,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,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,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
- 02      공직자 자신이나 가족이 임원·대표자 등으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·단체
- 03      공직자 자신이나 가족이 대리하거나 고문·자문 등을 제공하는 개인·법인·단체
- 04      공직자로 채용·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재직했던 법인·단체 또는 대리하거나 고문·자문 등을 제공했던 개인·법인·단체
- 05     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합산해 발행주식 총수의 30%, 출자지분 총수의 30%, 자본금 총액의 50% 이상을 소유한 법인·단체
- 06      최근 2년 이내에 퇴직하고 퇴직일 전 2년 이내에 실장·국장·과장으로서 직무담당 공직자를 지휘·감독했던 퇴직공직자
- 07      공직자를 지휘·감독하는 상급자
- 08      최근 2년 이내 1회 100만 원,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전거래의 상대방

# [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]

## 공직자가 해야 할 5가지 신고·제출 의무

### 1. 사적이해관계자 신고·회피 신청

**신고의무자** 공직자

**신고의무발생**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알게 된 경우

**신고의무발생**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신고 및 회피 신청

**위반 시 제재**

- 징계 및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
- 위법한 직무로 공직자 또는 제3자가 얻은 재산상 이익 환수

### 2.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·매수 신고

**신고의무자** 부동산 개발업무를 하는 공공기관의 공직자

※ 부동산 개발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공직자에게도 신고의무 발생

**신고의무발생** 소속된 기관에서 수행하는 부동산 개발사업지구 내에 공직자 본인 또는 가족\*이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매수하는 경우

\* 배우자, 생계를 같이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

**신고방법** (보유) 안 날부터 14일 이내  
(매수) 등기완료일부터 14일 이내 이해충돌방지 담당관에게 신고

**위반 시 제재**

- 징계 및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
- 위법한 직무로 공직자 또는 제3자가 얻은 재산상 이익 환수

### 3.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

**제출의무자** 고위공직자

※ 「공직자윤리법」상 재산등록의무자 중 '재산공개' 대상자

**제출의무발생** 임용(임기 개시) 전 3년 이내에 민간부문에서 업무 활동을 한 경우

**제출방법** 임용(임기 개시)일부터 30일 이내 이해충돌방지 담당관에게 민간부문 업무활동내역\* 제출

\* 재직했던 법인·단체와 업무내용, 대리·고문·자문 내용, 관리·운영했던 사업·영리행위 내용 등

### 4.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

**신고의무자** 공직자

**신고의무발생** 공직자 자신이나 가족\*, 특수관계사업자\*\*가 자신의 직무관련자와의 거래(금전거래, 부동산거래, 물품·용역·공사 등 계약)하는 행위를 알게 된 경우

\* 배우자, 직계존비속,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

\*\* 공직자 자신 또는 가족이 합산해 발행주식 총수의 30% 이상, 출자지분 총수의 30% 이상, 자본금 총액의 50% 이상 소유한 법인 또는 단체

**신고방법**

안 날부터 14일 이내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신고

**위반 시 제재**

징계 및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

### 5.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

**신고의무자** 공직자

**신고의무발생** 소속 공공기관의 퇴직자(최근 2년 이내)인 직무관련자와 골프, 여행, 사행성오락을 하는 경우

**신고방법** 사적접촉 전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신고

※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적 접촉 후 14일 이내 신고

**위반 시 제재** 징계 및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



# [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]

## 공직자가 하지 말아야 할 5가지 제한·금지 행위

### 1. 직무관련 외부활동 제한

#### 제한대상자

공직자

#### 제한행위

- ①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, 조언·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
- ② 소속기관의 직무와 관련된 자식이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
- ※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 등의 대가로 사례금 수수가 허용되는 경우는 가능
- ③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조언·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
- ④ 외국의 기관·법인·단체 등을 대리하는 행위
- ⑤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
- ※ ②④⑤의 경우 소속기관장이 허가하는 경우는 가능

#### 위반 시 제재

징계 및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

### 2. 가족 채용 제한

#### 제한대상자

공공기관(산하기관, 자회사 포함)

#### 제한행위

- 다음의 가족\*을 경쟁절차를 거치지 않고 채용할 수 없음
- 소속 고위공직자 및 채용업무 담당 공직자
- 감독기관 또는 모회사의 고위공직자
  - \* 배우자, 직계존비속,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, 생계를 같이 하는 형제자매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

#### 위반 시 제재

(고위공직자, 채용업무 담당 공직자 등이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·유도·묵인한 경우)  
징계 및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

### 3. 수의계약 체결 제한

#### 제한대상자

공공기관(산하기관, 자회사 포함)

#### 제한행위

- 다음의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
  - 소속 고위공직자 및 계약업무를 법령상·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
  - 감독기관 또는 모회사의 고위공직자
  - 해당 공공기관을 소관하는 상임이 소속 국회의원
  - 지방자치단체 등을 감사·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
  - 이상의 공직자의 가족\* 및 그들이 대표자인 법인·단체, 그들과 관련된 특수관계사업자\*\*
- 배우자, 직계존비속,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
- 공직자 자신 또는 가족이 합산해 발행주식 총수의 30% 이상, 출자지분 총수의 30% 이상, 자본금 총액의 50% 이상 소유한 법인 또는 단체

#### 위반 시 제재

(고위공직자, 계약업무 담당자 등이 자신이나 가족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·유도·묵인한 경우) 징계 및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

### 4.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·수의 금지

#### 금지대상

공직자

#### 금지행위

공공기관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물품·차량·선박·항공기·건물·토지·시설 등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·수익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·수익하게 하는 행위

#### 위반 시 제재

- 징계 및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
- 공직자 또는 제3자가 얻은 재산상 이익 환수

### 5.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

공직자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기관의 미공개 정보

#### 공직자



본인·제3자의  
재물·재산상 이익  
취득 금지

#### 제3자



부정한 방법으로  
취득하고 이를  
이용해 재물·재산상  
이익 취득 금지

#### 위반 시

- 7년 이하의 징역
- 7천만 원 이하의 벌금
- 재물·재산상 이익  
몰수·추징

#### 위반 시

- 5년 이하의 징역
- 5천만 원 이하의 벌금
- 재물·재산상 이익  
몰수·추징



본인·제3자의  
사적이익을 위해  
이용

#### 위반 시

- 3년 이하의 징역
- 3천만 원 이하의 벌금

※ 미공개정보  
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  
취득 여부의 판단에  
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 
정보로서 불특정  
다수인에 공개되기  
전의 것